

---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구비서류 양식

---

1. 입주신청 접수증
2. 입주선정신청서
3. 입주계약신청서
4.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종람확인서
7. 사용인감계
8. 위임장
9. 용지매매계약서(안)

## 입주신청 접수증

|          |              |       |      |      |
|----------|--------------|-------|------|------|
| 접수번호     |              | 2030- |      |      |
| 신청인      | 회사명          |       |      |      |
|          | 대표자          |       | 연락처  |      |
| 분양<br>신청 | 업종<br>(코드번호) |       | 분양위치 | 산업 - |

위와 같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 기 장 군 수

## 접 수 증(업체용)

|          |              |       |      |      |
|----------|--------------|-------|------|------|
| 접수번호     |              | 2030- |      |      |
| 신청인      | 회사명          |       |      |      |
|          | 대표자          |       | 연락처  |      |
| 분양<br>신청 | 업종<br>(코드번호) |       | 분양위치 | 산업 - |

위와 같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 기 장 군 수



#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                |              |
|-----|----------------|--------------|
| 신청인 | 회사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             |             |                        |                        |                          |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공장(사업장) 소재지 |                        |                        |                          |
|             | 입주형태        | [ ] 분양                 | [ ] 임차                 | [ ] 양도·양수 [ ] 기타         |
|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
|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물(서비스)                 |
|             | 규 모         | 부지 면적(m <sup>2</sup> ) | 건축 면적(m <sup>2</sup> ) | 제조시설 면적(m <sup>2</sup> ) |

|       |     |                        |                          |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                          |
|       | 소재지 |                        |                          |                          |
|       | 업 종 | 분류번호                   |                          |                          |
|       | 규 모 | 부지 면적(m <sup>2</sup> ) | 제조시설 면적(m <sup>2</sup> ) | 부대시설 면적(m <sup>2</sup>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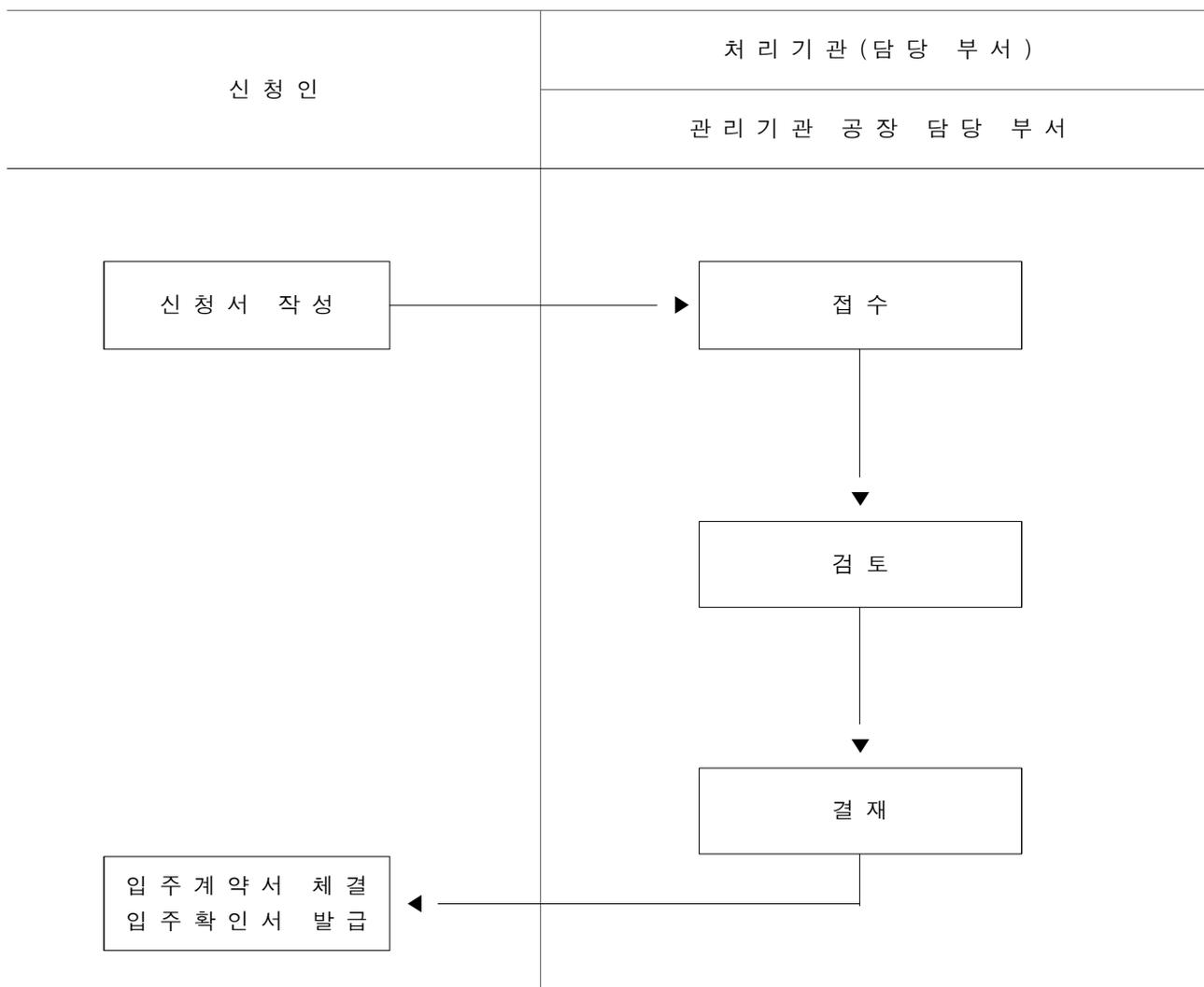
**부산광역시장**

직인

|      |  |           |
|------|--|-----------|
| 첨부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br>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br>없음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업계획서

20 . .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1. 사업개요

|          |     |         |        |        |
|----------|-----|---------|--------|--------|
| 업체<br>현황 | 회사  | 명칭      |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 이메일 주소 |
|          |     | 주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         |
|----------------|---------|
| 생산<br>제품<br>현황 | 업종(5단위) |
|                | 생산품명    |
|                | 주 원자재   |

|             |                |                               |                |   |  |  |
|-------------|----------------|-------------------------------|----------------|---|--|--|
| 공장<br>현황    | 공장 주소          |                               |                |   |  |  |
|             | 형 태            | 분양(○)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   |  |  |
|             | 용 도 지 역        |                               |                |   |  |  |
|             | 지 목            |                               |                |   |  |  |
|             | 공 장<br>건 설 계 획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착공 예정일                        |                |   |  |  |
|             |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   |  |  |
|             |                | 사업 시작일                        |                |   |  |  |
|             | 공 장 의<br>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
|             |                |                               | 국외             | 남 |  |  |
|             |                |                               |                | 여 |  |  |
|             |                |                               |                | 여 |  |  |
| 용지 면적       |                | m <sup>2</sup>                |                |   |  |  |
| 건축 면적       |                | 제조시설:                         | m <sup>2</sup> |   |  |  |
|             |                | 부대시설:                         | m <sup>2</sup> |   |  |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                |   |  |  |
| 기준공장 면적을    |                | %                             |                |   |  |  |
| 건폐율         |                | %                             |                |   |  |  |
| 용적율         |                | %                             |                |   |  |  |

|          |          |     |
|----------|----------|-----|
| 투자<br>규모 | 계        | 백만원 |
|          | 자기자본     | 백만원 |
|          | 타인자본     | 백만원 |
|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          | 외국인 투자비율 | %   |

|             |                |                |             |            |              |
|-------------|----------------|----------------|-------------|------------|--------------|
| 공장보유<br>구 분 | 자가( )<br>임차( ) | 공 장 설 립<br>형 태 | 신규 건립 입주( ) | 공 장<br>규 모 | 대( )         |
|             |                |                | 기존 건물 입주( ) |            | 중( )<br>소( ) |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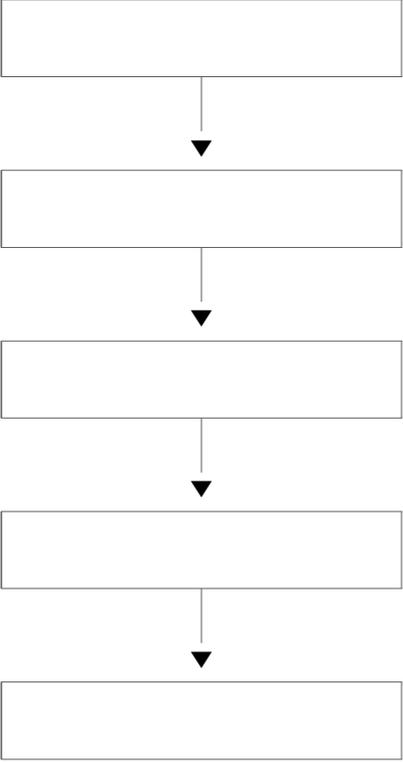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
| 제조시설           |     |   |   |   |   |
| 부대시설           |     |   |   |   |   |
| - 부대시설<br>세부용도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4. 생산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배출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br>(HP · kW · m³)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 비고                                     |
|-----|---------------------------|----|--------|-----|--|
|     |                           |    | 종류     | 배출량 |  |
|     |                           |    |        |     | 대 기 ( )종<br>수 질 ( )종<br>소음 · 진동(유 · 무)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 · 전력 · 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                     | 전력(kW/일) |      | 연료          |              |             |
|---------------------|---------------------|----------|------|-------------|--------------|-------------|
| 생활용수<br>(상수도 · 지하수) | 공업용수<br>(상수도 · 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br>(ℓ/일) | 가스<br>(m³/일) | 기타<br>(톤/일) |
|                     |                     |          |      |             |              |             |

## 7. 공장배치도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 사 업 계 획 서(예시)

20 . . . . .

회 사 명 (주) ○ ○ ○ ○ ○  
대 표 자 ○ ○ ○ ○ ○

직인

1. 사업개요

|          |     |         |        |        |
|----------|-----|---------|--------|--------|
| 업체<br>현황 | 회사  | 명칭      |        |        |
|          |     | 주소 ①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 이메일 주소 |
|          |     | 주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           |
|----------------|-----------|
| 생산<br>제품<br>현황 | 업종(5단위) ② |
|                | 생산품명 ③    |
|                | 주 원자재     |

|               |                   |                               |                |                |  |  |
|---------------|-------------------|-------------------------------|----------------|----------------|--|--|
| 공장<br>현황      | 공장 주소 ④           |                               |                |                |  |  |
|               | 형 태               | 분양(○)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                |  |  |
|               | 용 도 지 역           | ⑤                             |                |                |  |  |
|               | 지 목               | ⑥                             |                |                |  |  |
|               | 공 장<br>건 설<br>계 획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착공 예정일 ⑦-1                    |                |                |  |  |
|               |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⑦-2             |                |                |  |  |
|               |                   | 사업 시작일 ⑧                      |                |                |  |  |
|               | 공 장 의<br>규 모      | 종업원 수 ⑨                       | 국내             | 남              |  |  |
|               |                   |                               | 국외             | 남              |  |  |
|               |                   |                               |                | 여              |  |  |
|               |                   |                               |                | 여              |  |  |
|               |                   | 용지 면적 ⑩                       |                | m <sup>2</sup> |  |  |
| 건축 면적         |                   | 제조시설 ⑪:                       | m <sup>2</sup> |                |  |  |
|               |                   | 부대시설 ⑫:                       | m <sup>2</sup> |                |  |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⑬ |                   |                               |                |                |  |  |
| 기준공장 면적율 ⑭    |                   | %                             |                |                |  |  |
| 건폐율 ⑮         |                   | %                             |                |                |  |  |
| 용적율 ⑯         |                   | %                             |                |                |  |  |

|          |          |     |
|----------|----------|-----|
| 투자<br>규모 | 계 ⑰      | 백만원 |
|          | 자기자본     | 백만원 |
|          | 타인자본     | 백만원 |
|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          | 외국인 투자비율 | %   |

|             |       |                |             |              |      |
|-------------|-------|----------------|-------------|--------------|------|
| 공장보유<br>구 분 | 자가( ) | 공 장 설 립<br>형 태 | 신규 건립 입주(○) | 공 장<br>규 모 ⑱ | 대( ) |
|             | 임차( ) |                | 기존 건물 입주( ) |              | 중( ) |
|             |       |                |             |              | 소( )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 작성방법

- ① 본점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기재
- ② 업종코드(세세분류) 기재
- ③ 생산제품명 기재
- ④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 \_\_\_ - \_\_\_ ”로 신청한 필지 기재
- ⑤ “산업시설용지” 기재
- ⑥ “공장용지” 기재
- ⑦-1, ⑦-2 공장 착공 및 준공 예정일 기재
- ⑧ 공장설립 완료 후 최초 가동개시예정일을 기재
- ⑨ 예정 상시 근로자 수를 기재
- ⑩ 신청필지의 면적을 기재
- ⑪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 기재(건축물대장상 순수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
- ⑫ 상기 제조시설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⑬ 제조시설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을 합산한 면적
- ⑭ 제조 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  
-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내용 중 면적률 참조
- ⑮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1층 바닥 면적)의 비율
- ⑯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비율
- ⑰ 금회 공장설립 시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비,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 아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합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⑱ 상시 근로자(예정)수가 50인 미만이면 “소”,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 “중”에 체크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
| ①제조시설 | 예시)1000m <sup>2</sup> |   |   |   | 1000m <sup>2</sup> |
| ②부대시설 | 예시)300m <sup>2</sup>  |   |   |   | 300m <sup>2</sup>  |
| 창고    | 100m <sup>2</sup>     |   |   |   | 100m <sup>2</sup>  |
| 식당    | 50m <sup>2</sup>      |   |   |   | 50m <sup>2</sup>   |
| 연구실   | 150m <sup>2</sup>     |   |   |   | 150m <sup>2</sup>  |
| 계     | 1300m <sup>2</sup>    |   |   |   | 1300m <sup>2</sup>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 ③생산공정도   | ④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pre> graph TD     A[예시)원자재 입고] --&gt; B[소재절단 및 가공]     B --&gt; C[조립]     C --&gt; D[검사]     D --&gt; E[포장 및 납품]           </pre>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입고: 원부자재 종류 및 연간사용량으로 기재</li> <li>- 소재절단 및 가공: 공정별 자체 가공 및 외주 가공 여부 기재</li> <li>- 조립: 공장에 설치할 기계 및 장비와 연계하여 가공 형태를 상세히 기재</li> </ul> |

※ 작성방법

- ①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②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앞장의 사업개요에 작성한 면적과 일치하도록 작성)
- ③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공정단계별 공정명을 기재
- ④ 왼쪽 생산공정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

| 4. 생산시설 명세       |                              |                 |                 |
|------------------|------------------------------|-----------------|-----------------|
| 시설명 <sup>①</sup> | 용량 <sup>②</sup>              | 수량 <sup>③</sup> | 비고 <sup>④</sup> |
| 예시)범용선반          | 15HP                         | 1               | 금속 절삭가공용        |
| 예시)CNC선반         | 70HP                         | 1               | 금속 절삭가공용        |
| 예시)도장시설          | 7m <sup>3</sup> (내적)/5HP(동력) | 1               | 금속표면 도장처리용      |

| 5. 배출시설 명세 |  |    |                 |                  |   |
|------------|--|----|-----------------|------------------|---|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br>(HP · kW · m <sup>3</sup> )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 ⑦비 고  |
|            |  |    | 종류 <sup>⑤</sup> | 배출량 <sup>⑥</sup> |   |
| 예시)CNC선반   | 70HP                                   | 1  | 소음              |                  | 예시)<br>대 기 (5)종<br>수 질 (5)종<br>소 음 · 진 동(유) |
| 예시)도장시설    | 7m <sup>3</sup> (내적)/5HP(동력)           | 1  | 대기              | 5톤/년             |   |
|            |  |    |                 |                  |   |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6. 용수 · 전력 · 연료의 사용계획 |                     |           |      |             |                           |             |
|-----------------------|---------------------|-----------|------|-------------|---------------------------|-------------|
| ⑧용수(톤/일)              |                     | ⑨전력(kW/일) |      | ⑩연료         |                           |             |
| 생활용수<br>(상수도 · 지하수)   | 공업용수<br>(상수도 · 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br>(ℓ/일) | 가스<br>(m <sup>3</sup> /일) | 기타<br>(톤/일) |
| 예시)0.5                | 2(지하수)              | 100kW     | -    | 10(ℓ/일)     | -                         | -           |

## ※ 작성방법

- ① 공장내 설치할 기계 및 장비 목록을 기재
- ② 각 시설에 대한 용량 기재(모터마력수, 내경사이즈, 톤수, 암페어,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
- ③ 각 시설에 대한 수 또는 양을 기재
- ④ 각 시설의 설치목적 또는 사용용도를 기재
- ⑤ 각 시설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기재(폐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물질 중 해당되는 오염물질 종류를 기재)
- ⑥ 배출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재
- ⑦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규모(1~5종)를 선택하여 기재, 소음 진동 관련 배출시설 유·무 체크
- ⑧ 공장내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물의 양을 기재
- ⑨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일반전력(한전공급), 자가발전으로 구분하여 기재
- ⑩ 공장에서 필요한 연료의 종류 및 양을 기재

7. 공장배치도

예시)

제조시설 면적  
(공장: 1000㎡)

부대시설 면적  
(연구실: 150㎡)

부대시설 면적  
(창고: 100㎡)

부대시설 면적  
(식당: 50㎡)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 종 램 확 인 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입주 공고문(자격확인, 처분제한, 유의사항 등) 및 관련 고시, 기타 열람 서류(필지 제약사항, 입주업체 관리사항) 등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였으며 추후 분양받은 용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기장군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기장군수 귀하

# 사 용 인 감 계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법인의 명칭 등                                |
|------|------|---|
|      |      | 법 인 명:<br>법인등록번호:<br>주 소:<br><br>대 표 자: |

위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는 입주선정, 입주계약, 용지매매 계약 등 용지 분양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사용인감을 사용 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법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인감 인)

대표자명

기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위 임 장

|       |                 |                    |
|-------|-----------------|--------------------|
| 위 임 자 | 회 사 명<br>(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br>(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        |
|------------------------|-----------------|--------|
| 대 리 인<br>(신청하러<br>오신분)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임자와의<br>관계(직위)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분양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회 사 명

(인감 인)

대표자명

기장군수 귀하

|      |                                 |
|------|---------------------------------|
| 첨부서류 | 위임자(법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서(안)

 기 장 군

# 매 매 계 약 서

토지의 표시

|                     |           |      |                     |          |
|---------------------|-----------|------|---------------------|----------|
| 소재지(산단명)            | 획지        | 지정용도 | 면적(m <sup>2</sup> ) | 비고(업종 등) |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 산업___-___ | 공장   |                     |          |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기장군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수인" \_\_\_\_\_(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매도인"은 대상토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매각하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금 원(금 원) |                                    |      |                                |       |      |
|---------------|------------------------------------|------|--------------------------------|-------|------|
| 대 금 납 부 방 법   |                                    |      |                                |       |      |
| 구 분           | 납부약정일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납부할금액 | 미납대금 |
| 계약보증금(10%)    | 2021--                             |      | 제1조제2항에<br>따른 할부이자를<br>산정하여 부과 |       |      |
| 1차중도금(30%)    | 2021--                             |      |                                |       |      |
| 2차중도금(30%)    | 2021--                             |      |                                |       |      |
| 잔금(30%)       | 2021--                             |      |                                |       |      |
| 납부계좌          | <b>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b> |      |                                |       |      |

② "매수인"은 각 중도금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면 그때까지의 총 미납대금(각 중도금 납부약정일에 지급하는 할부원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한다.(분양대금 납부월 전월 기준 경제통계시스템상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신규취급액 평균이자율) 이 경우 할부이자율은 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중도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 "매도인"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2항(할부이자율)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이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매수인”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총 연체기간에 기간별로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연체 금액에 가산하여 “매도인”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        |                  |                   |         |
|------|--------|------------------|-------------------|---------|
| 지연기간 | 30일 이하 | 31일 이상<br>90일 이하 | 91일 이상<br>180일 이하 | 181일 이상 |
| 이율   | 연12%   | 연13%             | 연14%              | 연15%    |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 후에 사용하기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매도인”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매수인”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매수인”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쌍방이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매도인”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 납부방법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매수인”은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정산금은 일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도인”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에 더하거나 빼서 수납하거나 반환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가격정산) ① 준공인가 전에 조성월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확정된 조성월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기로 한다.

② 가격정산은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매도인”은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등) ① “매수인”이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법령, 행정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없이 토지 사용 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③ “매도인”은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또는 사업준공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 “매수인”은 대상토지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계약체결 전에 부과된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을 이유로 하여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매도인”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매수인”은 부지 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용지의 양도 및 임대금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제1조의 분할 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14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3. 이 계약으로 발생한 갑의 목적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신청이 있을 때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산업집적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
3.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5. “매수인”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6. “매도인”의 동의없이 대상토지를 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매수인”의 책임질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2.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 되는 경우(다만,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본 계약의 매매대금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체결일 이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질 사유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당기간 지연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간의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이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등기 말소 등 “매도인”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매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빼기로 한다.

⑥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⑦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12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1조에서 정한 최종 할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 조세 및 공과금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 할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 그 최종 할부금을 납부한 날을 제1항의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

제13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할부이자율·지연손해금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 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한다.

③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다만,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전화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매수인”이 주소 등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 등 의사표시는 종전 주소 등으로 발송하고, 발송일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매수인”의 불이익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특 약 사 항】

1. “매수인”은 인터넷 게시 고시문, 분양 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입주업체 관리사항, 필지 제약사항 등을 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2. “매수인”은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배전계획, 구조물계획, 절성토계획, 부지 내 법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제반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3.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토질, 옹벽·법면상태,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송전선로 등 기타 토지 이용 상의 장애 및 사업 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매도인”에 청구(또는 관련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계약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용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유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5. “매수인”이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며 계약 보증금은 “매도인”에 귀속됩니다.

6.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경계확인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인”이 각 시설 설치 기관에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7.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지장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요구 등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사업지구 내 현재 분양예정인 용지이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의 의거 해당 용지 매입 및 향후 건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매수인”은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용지 사용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전기, 가스, 우수,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또한 “매수인”은 건축공사 등의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 검사신청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11.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 후 필지 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배전반 등 기타 시설물 및 필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 도로 및 기타시설의 건설일정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단지조성공사 책임감리원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산업단지조성공사 책임감리원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14.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이외에 설치할 경우는 산업단지조성공사 책임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협의된 시설물 및 무단점유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 내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5.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 책임감리원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6. 공급부지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은 본 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설치할 간선시설인 우수관내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하저류조 등을 통해 우수관으로 처리되어 하수 처리장 및 우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7. “매수인”은 해당 지구의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계획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개발계획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 및 토지의 사용 시기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9.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일부 분양용지 구간에 옹벽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보강토 그리드 등이 부득이 하게 설치될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며, 설치한 그리드를 손괴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소화전, 방범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간판 등이 시설물로 인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1. 도로변에 소방용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경찰청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 등의 변경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22.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부지 계획고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23. 관리기관과 “매도인”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산업단지계획) 승인 내용,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4.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5. 본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부산광역시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이용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26.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27. 오·폐수처리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일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28. 부지조성은 비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토지의 지반특성(성토부)에 따라 건축공사 시 건축물 기초파일 및 지반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9. 조성된 토지는 현장 내 토취원으로부터 확보된 건설재료(토사 및 암버력)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부지로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 터파기 및 구조물 기초 시공 시 암버력(최대직경 300mm이하)이 출현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이를 감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0.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1.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분양공고문 등에 따라야 합니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계약체결 시 필요할 경우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성 명 기장군 기장군수 오 규 석 (인)

매수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성 명 (인)